

제주지방법원 2023. 8. 18 선고 2022가단6262 판결 [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]

---

## 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3. 6. 9.

판 결 선 고 2023. 8. 18.

## 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## 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D 전 40㎡에 관하여 1983. 5. 23.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 
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## 이 유

### 1. 기초사실

가. 제주시 D 전 12평(토지대장상 D 전 40㎡, 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에 관하여 1963. 7. 10. E 앞으로 1963. 7. 8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나. E은 2018. 10. 6.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F, 자녀인 G, H, 피고가 있었다. F과 G은 2018. 12. 4. E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고, H는 2018. 11. 9. E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. 한편 피고는 2018. 12. 4. E의 재산상속에 대해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.

다.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제주시 I 전 3573㎡(이하 ‘원고 측 토지’라 한다)에 관하여, 1963. 5. 23. J 앞으로 1935. 1. 12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, 2003. 5. 27. K와 L 앞으로 각 1/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, 2005. 5. 30. M 앞으로 K의 1/2 지분 이전등기와 N 앞으로 L의 1/2 지분 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, 2008. 9. 18. O 앞으로 M의 1/2 지분 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, 2014. 10. 21. P 앞으로 2014. 8. 24.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 이전등기가 마쳐진 끝에, 2022. 6. 20. 원고 앞으로 2022. 6. 3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4, 5호증(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),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, 변론 전체의 취지

## 2. 주장 및 판단

### 가. 원고의 주장 요지

원고는 2022. 6. 20.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원고 측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가 돌담을 경계로 원고 측 토지 영역 내에 포함되어 있다. J이 1963. 5. 23. 원고 측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소유권변동을 거쳐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승계되어 왔다. 따라서 1963. 5. 23.을 기산점으로 20년이 경과한 1983. 5. 23.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3. 5. 23.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### 나. 판단

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도, J 등 원고 측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그리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,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(대법원 1995. 3. 28.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).

따라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.

### **3. 결론**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강건